**감사 관련 학생회칙 및 감사시행세칙 일부개정안**

**발의일**: 2022년 8월 24일 제8차 중앙운영위원회

**작성자**: 감사원장 심형주

**발의 근거**: 감사시행세칙 제 2장 제6조

**배경**

현재 감사시행세칙에 사퇴에 대한 감사위원 보충에 대한 세칙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감사위원의 수가 6인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인원의 유연성이 부족하다.

**목적**

- 감사위원 인원수와 감사위원 충원 방식의 유연성을 보장하고자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감사시행세칙 일부개정안

|  |  |
| --- | --- |
| **제9조(구성)**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6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9조(구성)**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4인 이상 8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
| **제10조(위원)**   1. 감사위원 후보자는 본회 정회원 중 감사원의 추천을 통해 모집하며 후보자는 전학대회에서 인준한다. 단, 후보자가 3명 이상일 경우에는 감사원 내부 심의를 통해 후보자를 3명으로 압축한다. 2. 감사위원 6명 중 3명은 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인준하며, 나머지 3명은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인준한다. 3. 감사원 구성 정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감사원은 전학대회 종료 후 ~~15일 이내에~~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고 이를 전학대회에서 서면의결 형식으로 인준한다. | **제10조(위원)**   1. 감사위원 후보자는 본회 정회원 중 감사원의 추천을 통해 모집하며 후보자는 전학대회에서 인준한다. 단, 후보자가 2명~4명 이상일 경우에는 감사원 내부 심의를 통해 후보자를 2명 ~ 4명으로 압축한다. 2. 감사위원 4명~8명 중 2명~4명은 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인준하며, 나머지 2명~4명 은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인준한다. 3. 감사위원을 충원해야 하는 상황일 시, 감사원은 전학대회 종료 후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고 이를 다음 전학대회에서 서면의결 형식으로 인준한다. 감사원을 충원할 상황은 감사원 내부 논의로 판단한다. 4. 감사위원 사퇴 시, 다음 전학대회에서 사퇴 일시와 함께 서면으로 보고한다. 만약 감사원장이 사퇴했다면 새로운 감사원장을 내부에서 호선하고 함께 보고한다. |